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3.15.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환 산재 인정기준 개선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응대 업무 중의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2〉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7.1 시행)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6개 직종)였으나,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복수 사업장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상 기준 개선 (7.1 시행)

지금까지 단시간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 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4〉 기타 개정사항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하고, ▲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감독 실시

- 계도기간(3.16~4.30)을 거친 후 전국 1,100여곳 집중감독(5.1~5.31)-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사망재해 감소가 어렵다고 보아 건설현장에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437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55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유형별로는 추락(떨어짐, 257명), 충돌(부딪힘, 46명),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28명), 붕괴(무너짐, 27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집중감독 실시 전인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이 시기에 사업주가 스스로 미흡을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000여곳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괭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설치해체 현장 등이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 할 예정이다.

안전조치 소홀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으로!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 1석 3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경기도 김포시 소재 가구제작업체에서 작업도중 오른쪽 네 개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한 강○○님은 치료가 끝난 후 장애가 남았으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덕분에 무사히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강○○님이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적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잘 알기에 치료를 끝내고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사업주는 "사고이후 강○○씨의 복귀여부를 고민하

였으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덕분에 재해자를 복귀시키고, 고용한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나와 같이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근로자 강○○님은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인해 원직장복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이는 소규모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금 제1호 사업장인 “아로파(주)”의 사례이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주)커리어넷(☎1577-0221)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구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하셨어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하세요!

- '16.3.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쏘사업장 확대 적용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14.9.25)되었으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쏘 사업장에 대해 오늘('16.3.25)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동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15.10월~)하고 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비용지원”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건강증진활동 촉진을 위해 「2016년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을 실시한다.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

화를 위해 전문가교육, 상담, 간이검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장에서 의학·간호·운동·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해 방문상담·컨설팅 등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지원을 실시하며, 근로자 심리검사나 뇌심혈관 질환 간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금연보조제, 운동매트 등의 구입비도 지원된다.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단위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당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수의 협력업체를 보유한 모기업이나 화물자동차 조합과 같은 공동 사업장, 산업단지 입주 업체 협의회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접수를 받으며,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올 11월까지 예산(7.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한편, 2011년부터 시작된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연간 평균 약 500여 사업장이 신청해 지원을 받았으며, 활동분야별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53.2%), 뇌심혈관질환 예방(17.2%), 직무스트레스 관리(10.9%) 등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3월부터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미만인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수행요원에 의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지원에 나선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은 의무적으로 감리인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800㎡ 미만인 소규모 현장은 감리인 지정의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14년부터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5천 개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 수행요원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사)한국산업위생협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이들 기관의 수행요원들은 석면작업 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및 경력자들로 현

장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밀폐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작업계획의 적절성, 보유장비의 성능, 작업관리 현황 등을 살피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알려준다.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근로자 및 지역주민에게 석면노출의 위험이 큰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밖에 떨어짐이나 무너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된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에 대하여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석면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은 재해자는 모두 14명이며 이 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